

[별지 제3호서식] <신설 2020. 11. 29.>

개정 예고문

회원종목단체규정(회규)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1. 14.

대한체육회장

회원종목단체규정(회규) 일부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규정에 명시 필요
- 비위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목단체에 대해 체육회의 사전 또는 사후 지도·감독 권한 명문화
- 감사의 임기 명확화, 평가위원회규정 폐지로 관련 조항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- 회원종목단체 대회 개최 시,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·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 명시
- 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따라 명확히 규정
- 비위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목단체에 대해 체육회의 사전 또는 사후 지도·감독 근거 마련
- 평가위원회 규정 폐지에 따른 조항 정비

3. 의견제출

- 이 회원종목단체규정(회규)의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

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붙임 1. 회원종목단체규정 일부개정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(일부개정안의 경우에 한함).